5.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

[제 1 조] 목적

이 규칙은 [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] 중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(이하 '자격시험'이라고 칭한다)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제 2 조] 응시 자격

[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]의 제 9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

[제 3 조]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

- 1. 자격시험의 과목은 소아청소년 심장학으로 하며, 소아청소년 심장 내과학 분야와 소아청소년 심장 외과학 분야의 문제를 구분해서 출제한다.
- 2. 자격시험은 1 차 시험과 2 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며, 1 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 차 시험을 실시한다.
- 3. 1 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주관식과 객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하고, 2 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. 점수는 각각 100 점을 만점으로 한다.
- 4. 1 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, 2 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, 1 차 시험에 합격하고 2 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 차 시험을 면제한다.

[제 4 조] 시험의 시행 및 공고

- 1.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은 2 년에 한번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전년도 이사회의 결의로 연속하여 다음 연도에 시행할 수 있으나 3년 연속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.
- 2.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제출 서류의 종류, 응시원서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시험 실시 2개월 전에 대한소아심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다.

[제 5 조]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

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험표 (별지 제 13호 서식)
- 2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
- 3. 전임의 수련 증명서 (및 파견 수련 증명서)(별지 제 14호 서식)

- 4. 연수 평점 기록지 (별지 제 15호 서식) 및 관련 증빙 서류
- 5. 연수 평점 이수 증명서 (별지 제 16호 서식)
- 6. 전임의 수련 평가서 (별지 제 17 호 서식) (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지도전문의 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)
- 7. 전임의 수련 기록부 (별지 제 4호 서식)
- 8.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 실무 경력증명서 (또는 재직증명서)(필요 시 제출)
- 9. 수련기간 동안 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정규 학술지 (PubMed, Scopus 에 검색되는 국제학술지 혹은 학술진흥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학술지)의 제 1 저자로서 게재되었거나 게재 승인을 획득한 논문(원저 또는 증례보고)의 사본 1부
- 10. 사진 3 매 (*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 명함판 사진; 2 매는 응시원서와 수험표에 부착하고 1 매는 별도로 제출)

[제 6 조] 고시 위원의 선출

- 1.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, 시험의 감독 및 채점을 담당할 위원을 선출한다.
- 2. 고시 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, 선택, 감독 및 채점 위원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 선출하도록 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[제 7 조] 시험문제의 출제, 선택, 감독 및 채점

- 1. 시험문제의 출제, 선택, 감독 및 채점은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
- 2. 시험문제의 출제 위원은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밀봉 날인한 후에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시험문제의 선택 위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문제를 선택하고 교정하며, 선택된 최종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감독 하에 인쇄하여 밀봉 보관하도록 한다.
- 4. 시험 답안의 채점은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감독 하에 채점 위원이 실시하며, 채점 완료 즉시 확인하고 날인한 후에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에게 시험답안지와 성적표를 제출한다.
- 5.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출제 위원, 선택 위원, 감독 위원, 채점 위원, 인쇄 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에 대하여 비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[제 8 조] 합격자의 결정

1. 1 차 및 2 차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각 60 점 이상으로 한다. (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1 차 시험과 2 차 시험의 시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.)

- 2.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.
- 3.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세부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.

[제 9 조] 부정 행위자의 제재

- 1.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- 2.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- 3.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[제 10 조]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

- 1.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.
- 2. 매 5 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, 갱신 방법은 [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]을 따른다.

[부칙]

- 1. 이 규칙은 2006 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1 차 개정된 규칙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- 3. 2차 개정된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4. 3 차 개정된 규칙은 2019 년 11 월 16 일부터 적용한다.
- 5. 4 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- 6. 5 차 개정된 규정은 2021 년 8 월 24 일부터 적용한다.